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

공보담당관 형사1부장 이상목

전화 055-259-4302 / 팩스 0502-193-7270

보도자료

2024. 1. 17.(수)

제 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

- 오늘(1. 17.)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(지청장 직무대리 김지완)은 2024. 4. 10.(수)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「유관기관 대책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긴밀히 협력하여 ▲당선·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, ▲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▲선거 관련 금품수수, ▲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정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
 - 2024. 1. 17.(수) 14:00,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 4층 소회의실
- 참석자(총 11명)
 - 검 찰(3명) : 공공수사 전담검사 3명
 - 선관위(4명) : 마산합포·회원구, 함안·의령군 각 선관위 지도계장
 - 경 찰(4명) : 마산중·동부, 함안, 의령 각 경찰서 지능팀장

2

주요 회의 내용

○ 「중점 단속대상 범죄」에 대한 엄정 대응

- ‘선거 관련 폭력행위,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선거 관련 금품수수, 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’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
중점 단속대상 범죄

- **선거 관련 폭력행위** : ▲ 후보자, 선거사무장, 연설원,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·협박 ▲ 선거 관련 공무원·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·협박 ▲ 당내경선 관련 폭행·협박 ▲ 벽보·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
- **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** : ▲ 생성형AI기술,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▲ SNS상 가짜뉴스,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▲ 허위사실공표 ▲ 후보자 비방 ▲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
- **선거 관련 금품수수** : ▲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▲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▲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·요구 등
- **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** : ▲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▲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▲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

○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

-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수사·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.
-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·교환하고,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·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「**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**」

- 제7조 제1항에 따라, 선거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,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, 증거수집의 대상, 법령의 적용,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·교환 요청이 가능하고, 상대방은 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제7조 제2항에 따라,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·교환해야 하고,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·교환해야 함

○ **적법절차 준수 철저**
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‘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’ 논란이 없도록 모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중요성을 공유하고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- 특히 제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가명조서 작성 등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.

3 **향후 계획**

-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(2024. 10. 10.)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.
- 또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,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선거사범 신고센터

- ▶ 검찰 : 국번 없이 1301, 야간 (055) 239-4305
- ▶ 선관위 : 국번 없이 1390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nec.go.kr> (국민참여소통)
- ▶ 경찰 : 국번 없이 112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police.go.kr> (국민신문고민원)